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999

제출연월일: 2024. 8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 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'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 는 가구원'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부양의무자가 없는"을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없는"으로 한다.

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제8조의4 및 제8조의5에서 같다)는"을 "가구원(보조금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"으로 한다.

제8조의4제1항 중 "부양의무자"를 각각 "가구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한다.

제8조의5제1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양의무자"를 "가구원"으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생계급여ㆍ의료급여"를 "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제8조(양로지원) ① 65세 이상인 제8조(양로지원) ① ---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----- 부양의무자(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 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 이 항에서 같다)가 없는 -----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 ·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3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|제8조의3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) ① (생 략) 지급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 과 그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---- 가구원(보조금 수급희망 있는 배우<u>자, 부모, 자녀 및 그</u> 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제8조의 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4 및 제8조의5에서 같다)는 다 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 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생 략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국가 제8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----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에 대한

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 (참전유공자로서 요양지원에 대 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그 부양의 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 ·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 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 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 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급자와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조사・질문을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

<u>가구원</u>
<u>가구원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가구원이</u>

있다.

④ (생략)

제8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🗷 국가보훈부장관은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 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 자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제 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 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 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 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 · 신용정보 또 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 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 급자와 그 <u>부양의무자</u>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

④ (현행과 같음)	
제8조의5(금융정보등의	제공) ①
	<u>가구원이</u>
②	
<u>가구원</u>	

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 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 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 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 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 략)

제39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9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①
생계급여 • 주거급여 • 의료급여
<u>·교육급여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		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
	제8조의3부터 1 제8조의5까지	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
1		앞으로는 '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'의 소득·재산을
		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
		하려는 것임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8조의3부터	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
	제8조의5까지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
2. 상세 사유

○ 생활수준조사 대상비율은 0.4%(요양지원 대상 4,430명 중 18명)에 불과하고, 18명 중에서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없어 추가 예산 불필요

Ⅲ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•국장
장성훈 주무관	정우철 사무관	신경순 복지서비스과장	최병완 복지증진국장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우철	044-202-5631	matrixguy@korea.kr